

(장애아 전문, 장애아 통합) 어린이집 지정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30일	
신청인	성명(대표자 또는 설치자)			법인·단체명			
	주소			(전화번호 :)			
개요	명칭			종류			
	소재지			(전화번호 :)			
	원장 성명			생년월일			
	정원			명			
시설설비	보육실	m²	양호실	m²	대지	m²	
	놀이터	m²	조리실	m²	그 밖의 사항		
	사무실	m²	목욕실	m²			
보육교직원	총인원		보육교사		비고		
	명		명				
예산	수입액		지출액		비고		
	원		원				

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32조제2항 및 「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() 어린이집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시설 및 설비 목록(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포함합니다) 3.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(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4.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어린이집·보육교직원 현황, 교육계획안 및 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건축물대장	

처리절차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